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1. 개요

○ 실태조사 기간 : 2020년 7월 6일 ~ 7월 8일
○ 조사 대상자 수 : 총 49명
  * 개야도의 어업이주노동자 150여 명 중 약 1/3
○ 조사 대상자의 국적, 연령, 체류기간,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표 1>과 같음

<표 1. 조사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사업장 근무기간		
국적	동티모르	29 명	59.2 %			
	베트남	13 명	26.5 %	3개월 미만	1 명	2.0 %
	인니	7 명	14.3 %	3개월 ~ 1년	12 명	24.5 %
	합계	49 명	100.0%	1년 ~ 2년	13 명	26.5 %
연령	평균	28.3 세		2년 ~ 3년	9 명	18.4 %
	최저~최고	21~38 세		3년 ~ 4년	6 명	12.2 %
체류기간	평균	2.1 년		4년 ~ 5년	5 명	10.2 %
	최단~최장	0.6~6.3 년		5년 이상	3 명	6.1 %

2. 노동 조건

○ 하는 일 : 어업 및 양식업 <표 2>
  * 어종 : 꽃게, 멸치, 쭈꾸미, 소라, 오징어 + 양식 : 김

<표 2.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

어업+양식업	41 명	83.7 %
어업	7 명	14.3 %
양식업	1 명	2.0 %
합 계	49 명	100.0 %

“봄에는 꽃게를 잡았다. 그런데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휴어기다. 그래서 요즘은 멸치를 잡는다. 두 달 정도 멸치를 잡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꽃게를 잡는다. 겨울에는 김 양식을 한다.”

○ 노동자 수

- 사업장 내 평균 노동자 수 : 한국인 0.9명, 외국인 3.4명

○ 노동조건

-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6시간, 휴식시간은 0.7시간이었으며 휴일은 월 평균 0.1일
-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응답이 93.9%였으며, 이들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와서 배가 안 떠도 육상에서 그물 손질 등 다른 일을 한다고 답함
  * 휴일이 있다고 한 경우도 설, 추석 등 명절에 1~2일 쉬는 정도였음
- 응답한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을 바탕으로 계산한 월 평균 노동시간은 377.9시간이었음
- 각종 가산수당과 주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 당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3,246,000원이었으나, 실제 받고 있는 월 임금은 1,892,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54,000원을 덜 받고 있었음
- 자세한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 월 임금 등은 <표 3>, 실 지급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표 4> 참고

<표 3.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평균 노동시간	평균 휴식시간	평균 휴일	월 평균 노동시간*
12.6 시간/일	0.7 시간/일	0.1 일/월	377.9 시간/월

* 월 평균 노동시간 계산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가정함

<표 4.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월 평균 임금	월 최저임금[1)]	최저임금과의 차액[2)]
1,892,735원	3,246,161원	-1,353,426원

1) 월 최저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 수당 및 주휴 고려 없이 월 평균 노동시간 × 2020년 최저시급(8,590원)으로 단순 계산
2)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계산한 월 최저임금 - 조사에서 드러난 월 평균임금으로 단순 계산

"배 탈 때는 새벽 1~4시 사이에 출항한다. 자다가 선주가 부르면 나간다. 그리고 오후 3~4시에 들어온다. 들어오면 5시까지 다른 일 한다. 육지에서 일할 때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일한다. 무슨 일을 하던지 언제 시작하던지 마치는 시간은 오후 5시이다. 가끔 밤 11시에 출항할 때 있는 때, 그 때만 오후 3시에 마친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작업장에서 비옷 입고 일한다. 설, 추석에도 쉬지 않는다."

○ 임금지급 방식과 임금체불

-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지 여부를 물었을 때,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는 응답이 91.8%, 일을 더 하면 더 받는다는 응답이 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1%였음
- 일을 많이 하거나 생산량이 많더라도 수당이나 보너스가 전혀 없다는 응답 83.7%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30.0%에 불과했음.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고, 불규칙하거나 계약보다 낮게 지급된다는 응답이 18.4%로 뒤를 이었음. 아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응답도 10.2%나 되었으며, 통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임금이 본국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계약된 금액만큼 지급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20.4%였음
- 임금체불 유형별 응답은 <표 5> 참고

<표 5.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유형 (복수응답)>

임금체불 없음	15명	30.%
지연지급	23명	46.9%
불규칙하거나 적게 지급	9명	18.4%
미지급	5명	10.2%
모름	10명	20.4%

“바쁠 때는 하루에 17~18시간 일하는데,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건 없다.”

“2019년 3월 이후로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사장님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면 내년 4월에 준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개야도)

3. 산재와 건강

○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었던 사람: 25명 (51.0%)

- 그 중 치료를 받을 만큼 다치거나 아프지 않았던 5명 제외한 20명 중 12명(60.0%)만 병원 또는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음. 8명(40.0%)은 아픈데도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했다고 답함
-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과반수(53.1%)가 모르고 있었음. 다쳐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간 12명 중 5명은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함

○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었던 사람: 10명 (20.4%)

- 10명 중 7명(70.7%)은 선주가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거나, (혼자는 갈 수

가 없는데) 같이 가주지 않겠다고 해서 가지 못함
* 특히 개야도의 경우, 배를 타고 군산까지 가야 병원이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임

○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21명 (42.9%)
- 건강보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16.3%,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40.8%
-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입국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모두 건강보험이 있어야 함에도,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많음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직장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과반수였음

"일을 하다가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선주가 데리고 가주지 않았다. 보건소에는 몇 번 데리고 가주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혼자 병원에 갈 줄을 몰라서, 2020년 1월에 20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베트남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그 때 항공료도 월급도 받지 못했다."

"개야도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 보건소만 있다. 아프면 사장님이 보건소에 데려다준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른다. 혼자 갈 수 없는데, 사장님이 같이 가주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내가 배달부에게 받으면 내는데, 선주가 받으면 버려버린다. 그래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보험료를 못 내다가 한꺼번에 많이 낸 적이 몇 번 있다."

"건강보험료라고 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주는데, 보험료 안 냈다고 매달 고지서가 온다. 지금까지 안 낸 보험료가 100만원도 넘게 쌓였다."

4. 인권침해

○ 선주가 신분증이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선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 : 6명 (12.2%)
-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선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 : 20명 (40.8%)
  * 통장을 선주가 가지고 있어 임금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없는 사람 : 15명

(30.6%)

* 돈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없는 경우, 돈이 필요하면 선주에게 “가불”을 받음

○ 기타 인권침해, 부당대우

-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욕설과 폭언(73.5%)이며, 본업이 아닌 밭일이나 집안일 강요(26.5%), 외출 또는 출도 제한(24.5%) 순이었음
- 구체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는 <표 6> 참고

<표 6.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복수응답)>

욕설, 폭언	36명	73.5%
폭력 (본인 또는 동료)	7명	14.3%
외출/출도 제한	12명	24.5%
밭일/집안일 강요	13명	26.5%
조업 중 식사 미제공	5명	10.2%

“통장과 카드를 선주가 갖고 있어서 월급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른다.”

“통장이 선주에게 있다. 송금할 때는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데, 가끔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선주에게 말하면 선주가 돈을 찾아 준다. 그리고 월급에서 제한다.”

“일할 때 사장님이 욕을 많이 한다. ‘너 죽여버린다. 만약에 너 죽어도 네 가족한테 송금하면 된다.’고 하면서 욕을 한다. 그리고 매달 사장님한테 월급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항상 화를 내고 욕을 한다.”

“외국인 선원이 섬 밖으로 나가려고 여객선 매표소에 가면, 여객선 직원이 선주가 누군지 물어보고 선주한테 전화해서 그 선원이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선주가 허락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섬 밖으로 못 나간다.”

“배를 타면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 중간에 빵 한 개나 초코파이 두 개만 주고, 일 다 끝나고 돌아와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배가 고프다.”

5.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사장님이 점심을 계속 라면만 주고, 그것도 오후 3, 4시가 될 때까지 안 줘서 배가 너무 고프다. 월급을 두 달에 한 번 한 달 치 정도만 줘서 더 힘이 빠진다.”

“24시간 동안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일한지 4년이 넘었는데 개야도 바깥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쉬는 날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 쉬는 시간도 없고,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런데 선장은 계속 욕을 하고, 빨리 하라고 해서 지쳐있다. 일요일이라도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계약서와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 내가 불만을 말했더니 사장님이 나가서 불법하라고 했다. 그래서 참고 일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일하게 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된다.”

“2017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사장이 세 번이나 나를 때렸다. 쉬는 날도 1년에 설날 이틀, 크리스마스 하루, 딱 3일이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3년 끝나고 재고용할 때 사업장 이동하고 싶었다. 사장이 변경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동료 한 명이 그만두자 일손이 없다고 변경을 못하게 해서 여전히 이 사업장에 있다.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주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욕을 하고 화를 낸다. 한국에 온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일하는 시간 12시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없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도 너무 적다. 그리고 아플 때도 큰 병원 안 데려다준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 하고 싶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일하는 만큼 돈은 줘야 하고, 쉬는 날을 줘야 한다.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못 쉬게 한다. 사람은 쉬어야 하는데... 사장한테 사업장 변경 요청한 적 있는데, 싸인 안 해준다고 하면서 가고 싶으면 그냥 불법으로 나가라고 했다. 개야도에 베트남 사람 60~70명 있었는데, 일이 힘드니까 많이들 사업장 변경 해서 지금은 40명 정도만 남아있다. 나도 변경하고 싶지만, 노동청 사람들은 선주 말만 듣고 우리가 많이 일하고 돈 조금 받아도 변경하게 해주지 않는다.”